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37
----------	------

2017년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김혜련 의원(찬성자 15명)
- 나. 제 안 일 : 2016년 11월 22일
- 다. 회 부 일 : 2016년 11월 23일
- 라. 상 정 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6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혜련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미취업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진입을 촉진하고 사회초년생의 부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재학생 및 휴학생뿐 아니라 졸업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을 포함하며, 지원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개정안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2015년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6,979명에게 총 11억 9천 7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구분	
	인원	지원액
2012년	16,042	1,083
2013년	16,560	1,328
2014년	8,844	1,054
2015년	16,979	1,197
합계	58,425	4,617

※ 2016년은 미정산됨.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대학생(서울주소), 서울 출신(고교졸업) 대학생
-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휴학 6학기 포함)
- 지원이자 : 2009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이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과 다자녀 가구 대출자  
: 발생이자 전액 지원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대출자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원(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취업 후 상환학자금(다자녀 가구) 대출자의 이자지원 범위 확대 - 전액지원

#####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가. 이자지원 기간의 확대(안 제9조)

- 안 제2조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재학중(휴학 포함)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 략)</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나. 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라.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차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③ (생 략)</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차지원) ① ----- ----- ----- 서울지역 대학생 ----- -----.</p> <p>② 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p> <p>③ 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지원을 중단한다.</p> <p>1. (생 략)</p> <p>2. 제2조3호인 서울지역 대학생의 요건 상실</p>	<p>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 -----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2조제3호에 따른 -----</p>

- 최근 학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규모 및 대출자는 증가하고 있고<sup>1)</sup>,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서울시가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이자지원기간을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대상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완료(2017년 2월 21일)하였음.
- 다만, 동 사업은 서울시에 주소가 없더라도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서울시민이 아닌 대학생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주소를 두면서도 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지방대학에 재학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 사례〉

현행	서울시 주소를 둔 자		서울시 주소 요건 불필요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서울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서울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개정안	+	+	+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이자 지원 여부	○	X	○

- 지방자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sup>2)</sup>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시민인 대학생에 혜택<sup>3)</sup>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공시족 등의 증가로 서울이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들의 증가가 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sup>4)</sup>에서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이자를 지원

1) 머니투데이(2016.9.19.) 청년 10명중 7명 취업후에도 학자금대출 못 갚는 이유

2)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3)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김용석(도봉)의원 보도자료(2016.9.6), ‘서울시 공무원시험 합격하려면 경기도로 이사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12개 광역시·도에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를 둔 자를 지원하고 있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지지원 대상 현황〉

구분	이자지원대상	비고
서울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	대학생 학자금 이지지원 조례 제2조
부산	“부산지역 대학생”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2조
인천	“대학생”이란 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u>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u> 을 말한다.	제2조
광주	“광주 지역 대학생”이란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u>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u> 을 말한다.	제2조
대전	. “대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인 <u>학생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녀</u> 로서 대전광역시 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2조
경기	“경기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u>학생으로서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을 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충북	“지역 대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u>학생 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u> (본인 또는 직계존속) 타 지역 고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2조
전북	.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u>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을 말한다.	제2조

구분	이자지원대상	비고
전남	“전라남도 지역 대학생”이란 <u>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u> 을 말한다.	제2조
경북	“대학생”이란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u>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u> 을 말한다.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경남	“대학생”이란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도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2조
제주	3. “수급자”란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대출이 확정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신청기준일 현재 <u>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였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u> 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학생	제2조

○ 또한, 동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수당과 지급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바, 이중수혜 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 대상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537
----------	-------------

제안연월일 : 2017년 4월 2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인 "서울지역 대학생" 정의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울지역 대학생" 정의를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2조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p> <p>나. 시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p> <p>다.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p> <p>라.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서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의)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2조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p>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서울지역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생"을 "서울지역 대학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제2조3호인"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2조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로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시 소재 고등학교(대안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서울지역 외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차지원) ①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대상은 <u>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u>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 <u>대학생</u>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p>③ (생 략)</p>	<p>제3조(학자금대출 이차지원) ① ----- ----- <u>서울지역 대학생</u> ----- -----.</p> <p>② 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 <u>서울지역 대학생</u>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p> <p>③ <u>제1항의 이차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u></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지원을 중단한다.</p> <p>1. (생 략)</p> <p>2. <u>제2조3호인</u> 서울지역 대학생의 요건 상실</p> <p>3. (생 략)</p>	<p>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2조제3호에 따른</u> ----- -----</p> <p>3. (현행과 같음)</p>